「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<u>제 안 설 명 서</u>

≪ 의안번호 제1731호 ≫

- □ 의안번호 제 호 「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 - 동 조례 개정안은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및「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코로나 19를 비롯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 심각단계 경보 발령 시 시장이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.
 - 개정안은 올해 4월 9일 개최된 제14차 코로나 19 대응 관련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련 정부 지침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 - 조례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· 자영업자 및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,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- 이와 같이,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,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□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2020. 9. 8.

도시교통실장 황보연